#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574

발의연월일: 2024. 8. 5.

발 의 자: 민홍철・이기헌・한정애

백혜련 • 황운하 • 정준호

이연희 · 이학영 · 위성락

서왕진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는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, 최초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 신청 시에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 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, 도검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소지허가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어 발급이 용이하며 한번 소지허가를 받으면 갱신절차가 없어 소지자의 정신적 문제나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가 생겨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잠재적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음.

이에 도검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소지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,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 신청 시에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도검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안전관리

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삭제하고,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소지허가 를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6조의 제목 중 "총포 소지허가"를 "총포·도검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소지허가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에 따라 총포 소지허가"를 "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포·도검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소지허가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한다.

② 제12조에 따라 도검・분사기・전자충격기・석궁의 소지허가를

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. 제22조제5항제2호 본문 중 "5년마다"를 "제16조제2항에 따른 갱신 신청 전까지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소지허가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제16조제2항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갱신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16조제3항 개정규정에 따른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

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12조(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 제12조(총포・도검・화약류・분 사기 · 전자충격기 · 석궁의 소 사기 • 전자충격기 • 석궁의 소 지허가) ① 제10조 각 호의 어 지허가) ① -----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・도검・화약류・분 사기 · 전자충격기 · 석궁을 소 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1호 및 -----. <단서 삭제>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 이 경우 총포・도검・화약류・ 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 분사기 • 전자충격기 • 석궁 소 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 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신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렁으 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 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 제출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 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생 략) 제16조(총포・도검・분사기・전 제16조(총포 소지허가의 갱신) ① 자충격기 · 석궁 소지허가의 갱 (생 략) 신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2조에 따라 도검・분사 <신 설>

- ② 제1항에 따라 총포 소지허 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에 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 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서류 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 다.
-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갱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한다.
- 제22조(교육의 실시) ① ~ ④ (생 략)
  - ⑤ 총포·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의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.
  - 1. (생략)
  - 2.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:5년마다. 다만, 제47조제2항에 따라 석궁이 보관된 경우에는

| <u>기・전자충격기・석궁의 소지</u>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       |
| 날부터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        |
| 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|
|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       |
| <u>포・도검・분사기・전자충격기</u>   |
| <u>• 석궁 소지허가</u>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·<br>④ 제1항 및 제2항        |
| <u> </u>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·<br>제22조(교육의 실시) ① ~ ④ |
|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|
| (연애와 崔吉)<br>(5)         |
| 3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|
| 2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6조제2항에 따른 갱신 신        |
| <u>청 전까지</u>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반환 신청 전까지 교육을 유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예한다. 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⑥ (생 략)         | ⑥ (현행과 같음) |